

##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상주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3월 19일



###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#### 1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(2024.5.17.) 공포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(안 제44조제1항제2호, 안 제56조의3, 안 제61조의3, 별표28)

나.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규정 추가(안 제55조제9항)

-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(40퍼센트)

다.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(안 제57조의3)

-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(120퍼센트)

라.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(안 제60조제1호)

- 임대 의무기간(8년) 삭제

마. 특정 용도지역 내 공장 설치기준 변경(별표3, 별표15, 별표18, 별표22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] 규정 변경 반영[유해물질 관련 규정, 관련법령명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)변경 등]
- 특정요건 만족하는 공장에 한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[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(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)]

바. 자연녹지지역 내 판매시설 설치기준 중 중앙부처 고시권자 변경(별표16)

- ‘지식경제부장관’을 ‘산업통상자원부장관’으로 변경

사. 보전관리지역 내 하수 등 처리시설(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

공공하수처리시설) 설치허용(별표17)

아.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설치허용(별표18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제4호 너목에 따른 수리점 중 농기계수리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

### 3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9일까지 상주시(도시과)로 서면,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기재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 나. 제출처

- 이메일: [ssh4867@korea.kr](mailto:ssh4867@korea.kr)
- 전 화: 054)537-7572
- 팩 스: 054)537-6349
- 우 편: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 도시과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.go.k>, 입법예고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